



경기도

##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12. 29.] [조례 제5778호, 2017. 12. 29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 및 공개대상)** 이 조례에서 “업무추진비”란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,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·출연한 기관(이하 “산하기관”이라 한다)의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.

**제3조(공개시기 및 방법)**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
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, 집행목적, 장소, 집행대상,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.

**제4조(자료의 작성)**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5., 2015. 4. 30., 2017. 12. 29.>

1.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,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, 구입 및 지급일시, 수량,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<개정 2013. 8. 5.>
2.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,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<개정 2013. 8. 5.>
-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,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.

**제5조(지출기준)**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집행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8. 5., 2015. 4. 30., 2017. 12. 29.>

1. 언론,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
2. 기관장 친목회, 각종 동우회·동호회, 시민·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
3.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
-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)**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, 절차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자료제출)** 제2조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경기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시정요구 등)** ① 도의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,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2012. 10. 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4.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.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·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

**부칙** (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4576호, 2013. 8. 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4898호, 2015. 4. 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) <제5778호, 2017. 12. 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